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4년 12월 15일

CUOMO 주지사, 뉴욕주 애완동물 보호 증진 법안에 서명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 애완동물들의 보호를 증진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고양이, 개 및 기타 모든 애완동물을 제한된 상황에 의거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인의 기쁨을 위한 순전히 미용 목적을 위해 불필요하게 피어싱하고 문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본 법률 위반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단순한 동물 학대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본인은 이 상식 법안에 서명하여 뉴욕주에서 이러한 잔인하고 용납할 수 없는 관행을 영원히 종식하여 자랑스럽습니다."

법안 (A.739-D/S.6769-C)는 동물들을 불필요한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양이와 개를 포함한 모든 애완동물의 피어싱과 문신을 금지합니다. 이 법안은 토끼의 귀 태그, 식별 목적만을 위한 문신 같은 제한적인 경우 또는 피어싱이 동물에게 의료적 이점을 주고 면허 수의사에 의해 또는 감독 하에 수행되는 경우에만 피어싱과 문신의 이용을 허용합니다.

본 법률의 위반은 15일 이하의 구금 및/또는 $25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120일 후에 발효됩니다.

상원의원 Tom Libou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동물에게 보디 피어싱 또는 문신하는 것은 비양심적이고 잔인합니다. 동물은 피어싱 또는 문신 같은 고통스러운 시술에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들을 위해 일어서 이 비정한 관행을 금지하여 본인은 기쁩니다."

본 법안 발의자인 Linda B. Rosenthal 하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문신이나 피어싱에 관련된 고통을 기꺼이 겪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동물들은 그러한 사치가 없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잘못되고 이기적인 미적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문신과 피어싱 같은 고통스러운 미용 시술에 동물을 맡기는 것은 비인륜적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 잔인한 행위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본인은 주지사께서 본인의 법안에 서명하여 기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런 종류의 행위가 동물 학대를 구성하고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We Work for the People
Performance * Integrity * Pride

Korean